

(앞쪽)

제 호

역학조사반원증

사 진

2.5cm × 3cm

(모자 벗은 상반
신으로 뒤 그림
없이 6개월 이내
촬영한 것)

성 명
기 관 명

65mm×95mm(백상지 150g/m²)

(색상: 연하늘색)

(뒤쪽)

역학조사반원증

소 속:

성 명:

생년월일:

활동기간: . . .부터 . . .까지

위 사람은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
제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합니다.
년 월 일

산 립 청 장
시 · 도 지 사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

1. 이 증표를 소지한 자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·방해 또는 회피해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2.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.